

국제안전도시 사업 지원 협약 내용 수정

〈협약 내용 수정〉

변경 전	변경 후	요청 기관
제4조(지원사항)	제4조(지원사항)	
1. 강북구 안전도시 사업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 또는 워크숍 개최	변동없음	
2. 강북구 안전도시 연차보고서 관련 자문제시 (각년도)	"	
3. 강북구 안전도시 관련 네트워크 활동 지원 (각년도)	"	
4. 국제안전도시 공인 행정절차 지원 (공인 및 재공인 추진 시) 가. 공인(재공인)을 위한 사전 현지방문 실사 및 검토, 평가의견 제시 나. WHO 지역사회안전증진협력센터의 공인(재공인)과정 자문	4. 국제안전도시 공인 행정절차지원 (공인 및 재공인 추진 시) - 가, 나 항 삭제	지역사회 안전증진연구소
5. 강북구의 현 안전도시 사업 모니터링 및 차기년도 사업방향 수립 자문	변동없음	"
6. 국내외 사업 관련 전문정보 제공	"	
	- 항목 추가 7. 기타 국제안전학교 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자문 및 공인(재공인) 관련 행정절차 지원	강북구

※“WISS자료 업데이트” 추가부분은 지원업무와는 별도의 운영사항으로 앞으로 WISS의 활용가치가 제한적일 수 도 있다는 우려와 변동 가능성이 많아 추가 불가 단, 2016년 강북구 WISS는 별도 비용 부담 없이 업데이트 가능 (안전연 2016-010(2016.02.15.) 회신)